



제 429회 국회 (정기회)
제 1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 〉

■ 임오경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2901호)

2025. 11.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	2
※ 참고자료	
1. (사)국어문화원연합회 기관 현황	6
2. 타 입법례	9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9. 11.

다. 회부연월일 : 2025. 9.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국가는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었고,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국어 관련 상담의 실시, 쉬운 우리말 쓰기, 언어문화 개선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원활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로 하여금 국어문화원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어문화원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시스템 구축, 공공성 강화 및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경비 지원 근거 신설(안 제24조)

가. 개정안 요지

-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 및 지원의 법적 근거 신설(안 제24조).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생략) <u><신설></u>	제24조(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u>국어문화원은 국어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어문화원연합회 (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u> ③ <u>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u> ④ <u>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 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u> ⑤ ----- ----- <u>국어문화원 및 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연합회</u> ----- ----- <u>경비를</u> ----- -----.
<u><신설></u> <u><신설></u>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라 지정 된 <u>국어문화원</u> 의 운영에 필요 한 <u>경비의 일부를</u> 예산의 범위 에서 보조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③ (생략)	⑥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국어문화원의 지정 <u>방법</u>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 <u>방법, 연합회의 설립·운영</u> ----- -----.

다. 검토사항

- 현행법은 제24조를 통해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 관련 상담을 위해 문체부 장관이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대학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는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역별 국어문화원 현황	
지역	국어문화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세종, 한국방송, 한글문화연대
경기	한양대학교, 안양대학교
인천	인하대학교
강원	강원대학교
충남	상명대학교
충북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대전	한남대학교
세종	고려대학교(세종)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경북	영남대학교
대구	경북대학교
울산	울산대학교
부산	동아대학교
전남	국립목포대학교
전북	전주대학교
광주	전남대학교
제주	제주대학교

- 또한 국어문화원 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가 설립되어¹⁾, 국어능력 향상 교육 및 문화행사 개최 사업 등을 통해 국어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국어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지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합회를 국가 국어 정책의 제도적 파트너로서 위상을 확보하고, 전국 국어원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사업의 지속성과 공공성을 담보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국어문화 진흥 효과를 높이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어 보임.
-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국어문화원연합회의 법적 지위를 확립하고 예산 지원의 근거를 명시하여 국어정책 기반을 제도적으로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전국 22개소 국어문화원 간의 상호협력 및 균형발전을 보장하고, 공공언어개선과 언어문화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국어문화 진흥 성과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에 입법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380

1) 2020.1월 설립, 2024.7월 공직유관단체 지정

참고 1

(사)국어문화원연합회 기관 현황

□ 기관 개요

- (유형) 공직유관단체
- (설립일) 2020. 1. 23.
※ '06.1월 결성, '08.5월 창립(임의단체), '20.2월 법인 설립, '24.7월 공직유관단체 지정
- (주요기능) 공공언어 개선 사업 지원, 국어문화원(22개소) 운영 및 활성화 지원
- (기관장) 김덕호
- (소재지) 서울시 강서구
- (법적근거) 민법 제32조

□ 기관 연혁

2005년 07월	· 국어기본법 시행령 발효
2006년 01월	·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 출범(초대 회장 남영신 취임)
2008년 05월	· “국어상담소→국어문화원, 전국국어상담소연합회→전국국어문화원 연합회” 명칭 변경
2009년 01월	· 제2대 회장 취임(박창원 이화여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1년 01월	· 제3대 회장 취임(남기탁 강원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3년 01월	· 제4대 회장 취임(소강춘 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5년 01월	· 제5대 회장 취임(소강춘 전주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2017년 03월	· 제6대 회장 취임(김미형 상명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2019년 01월	· 제7대 회장 취임(김미형 상명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2020년 01월	· 사단법인 국어문화원연합회 설립(2020. 01. 23.)
	· 초대 회장 취임(김미형 상명대 한국어문학과 교수)
2023년 02월	· 제2대 회장 취임(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
	* 회원사 22곳 국어문화원(2025년 10월 현재)
2024년 07월	· 공직유관단체 지정

□ 기관장 주요 경력

성명	김덕호
생년월일	1961년 4월 13일
임기	2023년 2월 17일~2026년 2월 16일
주요경력	· 한글학회 대구경북지회장 · 문화체육관광부 국어심의회 심의의원 · 한국방언학회 회장 · 경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 최근 3년 예산(2023년~2025년)

(단위:백만 원)

	하위 사업명	2023년	2024년	2025년
공공언어 개선 지원 사업	국어문화원 지원	500	500	500
	범국민 언어문화 개선	751	751	676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	4,301	1,721	1,189
	학술용어 정비 사업	600	580	300
합 계		6,152	3,552	2,665

□ **지역별 국어문화원 현황(2025년 10월 현재)**

지역	국어문화원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세종, 한국방송, 한글문화연대
경기	한양대학교, 안양대학교
인천	인하대학교
강원	강원대학교
충남	상명대학교
충북	청주대학교, 충북대학교
대전	한남대학교
세종	고려대학교(세종)
경남	경상국립대학교
경북	영남대학교
대구	경북대학교
울산	울산대학교
부산	동아대학교
전남	국립목포대학교
전북	전주대학교
광주	전남대학교
제주	제주대학교

□ **국어문화원 사업 실적(최근 5개년)**

연도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 교육	국어 상담	교정 윤문	문화재 안내문 감수	국어 대회 및 행사	
					(건)	(참여자 수)
2020	35,098	2,895	3,400	1,706	37	19,511
2021	35,947	2,934	1,738	1,189	58	11,858
2022	57,765	3,114	2,011	979	59	35,397
2023	53,915	2,959	1,646	304	81	29,619
2024	53,521	3,369	1,782	465	137	47,310
합계	236,246	15,271	10,577	4,643	372	143,695

법률명 (법률번호)	조문내용(조항)
지방문화원 진흥법 (제17417호)	• 제12조(연합회의 설립) ① 지방문화원은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지방문화원 간의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는 법인으로 한다. <이하 생략> • 제14조(「민법」의 준용)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문화원과 연합회에 그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無償)으로 대여할 수 있다.